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2. 2 선고 2015나59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2. 2 선고 2015나5948 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 7. 21 선고 2015가단38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 5.

판결 선고 2016. 2. 2.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 7. 21. 선고 2015가단38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1995. 5. 19. 접수 제2825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 별지 목록 제4, 5, 6, 7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12. 27. 접수 제7372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기존의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원고의 항소취하로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제출한 증거로서 원고의 소유권취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7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상속인과 사실상의 양수자 기타 사실상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추어 관할소관청에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는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에는 민법 제186조에 따라 물권의 득실변경을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상속인과 사실상의 양수자 기타 사실상의 소유자도 포함된다. 원고는 사실상 양수자 내지는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고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한 사람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은 법령에 정한 서면을 갖추어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사람이 곧바로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권자가 되거나, 위 규정에 따라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소유권자가 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주진암

판사방혜미

판사노한동

별지